

선사의 대응현황 및 문제점

이택규

현대상선

I. 선사의 대응현황

- SOLAS 11-1/2장 및 ISPS Code Part A, B 이행 ; CSO, 선장, SSO가 의무 및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 제공(ISPS Code Part A. 6항)

1. Shore

- 1) 선박보안교육실시
: In-House Training Module을 개발하여 한국정부 및 PMA 승인후 자체교육 시행
- 2) 사내전문인력 양성
: SSA이행, SSP검토, Internal Audit, 보안사고 발생시 조치 등
- 3) PDOS를 통해 SSO 및 Crew에게 주요한 Ship Security Information 사전 숙지교육 실시
- 4) Ship Security Information 접수 및 선박안내
- 5) Ship-Shore Exercise 계획 수립 및 집행

2. Ship

- 1) SSO가 승무원에게 선박보안에 대한 선상교육 실시
- 2)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선박보안 이행
- 3) Em'cy Ship Security Drill 이행

II. 문제점 및 개선사항

1. 선박보안계획서(Ship Security Plan)

- 1) 기국정부에 따라 승인 및 개정 기준이 상이
 - 한국 : 정부에서 직접 승인 및 개정사항 발생시 신고
 - 파나마 : RSO에서 승인 및 개정사항 발생시 승인 신청
- 2) SSP Approval Fee 유무

2. 국가간 보안이행/임검수준 상이

- 1) UAS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임검수준이 까다롭지 않음.
- 2) 동일국가에서도 항만마다 보안이행 요소에 대한 차이점 : USA의 경우 Stevedore의 ID Check 등
- 3) 선종에 따라 Port Facility의 역할 차이
: Ro-Ro선의 경우 Stevedore의 신분확인에 대한 보장이 요구됨

3. PAN(Pre-Arrival Notification)

- 1) 국가별 PAN Form 상이하역 선무가중
- 2) 입항전 보고시한 상이
: 미국 96시간전/기타 24시간전

◆ 매 입항전 Agent 경유 필요사항 확인후 보고사항 이행중

※ PAN 양식 및 입항절차 이행 관련 IMO Standard 필요

4. Contact Point

- 1) 각 국가 항만의 선박보안담당자 및 항만보안담당자 List가 IMO website에 일부 등록이 누락되어 있고, 변경사항 발생시 Update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.
- 2) IMO website상의 Contact point list를 Download 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

◆ 매 입항전 Agent 경유 해당 Information 확인후 조치중

5. Cargo에 대한 검증

- 선종에 따라 위험물(폭발물) 반입에 대한 검색 : 특히, Ro-Ro선의 경우는 Loading 작업중에는 현실적으로 검색 불가함.

※ Port Facility에서 철저한 사전 보안 검색이 요구됨.

6. 운항선 인수(기국변경)시 ISSC 발급

- SSA 이행 및 SSP 승인 등 ISSC 발급을 위해 In Port Time 증가 예상(Off-Hire 발생가능)

※ 운항선 인수(기국변경) 관련하여 ISSC 발급절차 간소화 필요